



## <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>

### 1. 중대재해처벌법이란

-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대상

### 2. 적용범위

- **2024. 1.27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**, 여기서 사업(사업장)이란 경영상일체를 이루는 조직단위인 법인, 기관, 기업 그 자체를 의미하며, 음식점·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적용대상

- ① 사망자1명 이상 발생 (사고사망, 질병사망 모두 포함)
- ②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발생
-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이상 발생  
(직업성 질병: 급성중독, 독성간염 등 24개 질병)

- **중대재해책임주체**: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서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, 공공기관의 장, 개인사업주 등

- **보호대상**: 근로자와 도급·용역등의 계약형식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해 노무제공자, 수차례 도급 시 각 단계의 수급인, 수급인의 근로자 등

### 3.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#### 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·이행에 관한 조치

- 기업 스스로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·대처 및 통제방안을 마련·이행하며,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

| 핵심요소                  | 실행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경영자 리더십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<b>경영방침·목표</b> 설정</li> <li>▶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<b>공표·게시</b>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안전보건<br>인력·예산 배정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안전·보건 조직·<b>담당자</b>를 지정하고, 권한과 책임을 부여</li> <li>▶ 안전·보건 <b>예산</b> 편성, <b>용도</b>에 맞게 집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유해·위험요인<br>파악·개선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·개선하는 <b>위험성평가</b> 실시</li> <li>▶ <b>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</b> 및 근로자 <b>교육</b> 등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 파악·개선에 근로자 참여·공유</li> <li>▶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(안전보건 제안제도, 아차사고 신고, 안전 소통채널 운영 등)</li> <li>▶ 도급·용역·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</li> </ul> |
| 4. 안전보건관리<br>체계 점검·평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고 등 <b>비상상황</b> 대비 <b>매뉴얼</b> 마련 및 <b>훈련·점검</b></li> <li>▶ 산재사고, 아차사고 조사 및 <b>재발방지대책</b> 마련</li> <li>▶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<b>정기적 점검·평가</b>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
-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·위험요인의 제거·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

####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
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·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·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하며, 사업장 감독에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함

####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점검, 조치
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

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

- 점검결과,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·예산의 추가편성·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

- 유해·위험작업에 관한 안전·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

#### **4.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교육**

-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**안전보건교육(20시간)**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# **5.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**

##### **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**

- 사망자 1명이상 발생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
-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

##### **② 법인 또는 기관:**

- 사망자 1명이상발생시 그 행위자 벌하는 외에 50억원이하 벌금
- 사망 외 중대재해발생시 그 행위자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
- 이외 손해액의 5배내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별도 발생